

2022. 9. 23.(금) 10:00

제299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전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사유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34조 제1항(결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5.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차 인 잔 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084,278	1,093,656	914,662	178,994	87,358	17,561	24,288	7,249	42,538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1,075,770	1,105,501	1,085,029	1,511	18,962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964,928	110,842	1,075,770	906,320	129,207	7,463	32,780

3)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타특별회계	8,508	8,628	8,627	0	1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	8,395	8,508	8,342	0	30	136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계	계	386	129,207	‘현풍 교통문화파크조성’ 등
일 반 회 계	명 시 이 월	252	87,358	
	사 고 이 월	124	17,561	
	계속비이월	10	24,288	
특 별 회 계	명 시 이 월	0	0	
	사 고 이 월	0	0	

6. 기금의 결산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 성 액
		조성액	사용액	
계	95,264	49,700	21,551	123,4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83,388	40,779	20,300	103,86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6,912	80	6,832
식품진흥기금	153	57	95	115
자활기금	841	67	40	868
재난관리기금	9,703	1,772	833	10,642
옥외광고발전기금	402	103	200	305
체육진흥기금	777	9	3	783

7.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 권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발생액	해당연도 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3,943	263	502	3,704
일반회계	3,702	233	472	3,463
특별회계	1	0	0	1
기 금	240	30	30	240

2) 채 무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발생액	소멸액	
계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계	2,157,932	425,578	39,382	2,544,128
행 정 재 산	2,149,016	424,492	37,005	2,536,504
일 반 재 산	8,916	1,086	2,377	7,624

4) 물 품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년도말현재액		증 감 내 역				해당연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903	12,010	75	1,313	16	52	962	13,271

8. 금고의 결산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계	1,093,656	914,662	178,994
일 반 회 계	1,085,029	906,320	178,709
기타특별회계	8,627	8,342	285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282	79	20,830	20,750	1,362

Ⅱ.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937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94억원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3.6%인 9,147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90억원입니다.
- 이 중 명시이월비는 874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176억원, 계속비는 243억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7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5억원입니다.
- 세입은 전년대비 869억원 감소하여 7.4%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673억원 감소하여 6.9% 감소하였습니다.
-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319억원이 감소하고, 지난 5년간 평균 감소율이 24%에 달하고 있어 재정의 균형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집행액이 전년도에 비해 6.9% 감소하였으며, 이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6.5% 증가 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을 제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2021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234억원으로 전년 953억원 대비 29.5%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3조 6,231억원으로 전년도 3조 4,751억원보다 1,4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지표수 174개 중 123개를 달성하여 달성률 70.7%이며, 이는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에 비해 2.9%증가하였습니다.
- 2021회계연도말 채권은 37억원이고, 채무액은 0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3,862억원 증가한 2조 5,441억원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전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출사유

- 2021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예비비)

5.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집행 현황

1) 회계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500	3,500	0	0
일반회계	3,500	3,500	0	0
특별회계	0	0	0	0

2)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관 련 서	예비비 배정과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적 요
	편성목	통계목						
농업 정책과	소 계			3,500,000	3,500,000	0	0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2-02	2021. 8.17.	3,500,000	3,500,000	0	00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가지원

II.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350만원이며, 그 중 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농가지원을 위해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되고, 사용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512백만 원
 - 2022년 군 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농협 5억 원, 대구은행 1천2백만 원)를 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
 - 관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하기 위함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최 재 훈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30,875백만 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512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h rowspan="2" style="width: 10%;">구 분</th><th rowspan="2" style="width: 10%;">사업 기간</th><th rowspan="2" style="width: 10%;">2022년 제2회추경</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 style="width: 10%;">계</th><th style="width: 10%;">국비</th><th style="width: 10%;">시비</th><th style="width: 10%;">군비</th><th style="width: 10%;">기타</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 style="text-align: center;">2022년</td><td style="text-align: center;">512</td><td style="text-align: center;">512</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 style="text-align: center;">512</td><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제2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2년	512	512	-	-	512	-
구 분	사업 기간				2022년 제2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2년	512	512	-	-	512	-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 의 건 (총평)	○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512백만 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2백만 원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출연액	2022년 출연액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A)	부서 검토액 (B)	증감 (B-A)
총 계	3,260	3,000	512	512	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3,260	3,000	512	512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 4. 4. 법인성립년월일 : 2000. 4. 26.						
임원 (22.9.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당연직)			2022. 7. 1 ~ 2026. 6.30	
	비상임이사	송정근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김동조	前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읍변영회장			2019. 6. 21~ 2023. 6. 20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1. 1. 1 ~ 2024.12.31	
	비상임이사	홍진웅	화원새마을금고 이사장			2021. 1. 1 ~ 2024.12.31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21. 6.21 ~ 2023. 6.20	
	비상임감사	공진환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22. 7. 1 ~ 2023.12.31.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현황 2022.08.31. 기준	자산	30,875백만 원
	예산액	4,649백만 원	3,770백만 원	3,833백만 원		부채	백만 원
	지자체 지원액	4,310백만 원	3,260백만 원	3,000백만 원		자본	30,875백만 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Ⅱ. 검토의견

2022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재)달성장학재단의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 5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2022년 군 금고 출연 대외협력사업비를 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농협 5억원, 대구은행 1천2백만원입니다.
- 이번 출연금 변경계획안은 장학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관내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이견은 없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과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

3. 주요내용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1,001,000	880,200	120,800
일 반 회 계		999,400	878,600	120,800
특 별 회 계		1,600	1,600	—
	의료급여기금	949	949	—
	치수사업	651	651	—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1,000	880,200	120,800	13.72
일 반 회 계	계	999,400	878,600	120,800	13.75
	지방세수입	198,695	198,695	0	0
	세외수입	44,329	40,604	3,725	9.17
	경상적세외수입	25,889	24,774	1,115	4.50
	임시적세외수입	11,108	9,998	1,110	11.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32	5,832	1,500	25.72
	지방교부세	255,511	188,745	66,766	35.37
	조정교부금등	48,283	46,529	1,754	3.77
	보조금	408,316	384,941	23,375	6.07
	국고보조금등	266,114	252,927	13,187	5.21
	사·도비보조금등	142,202	132,014	10,188	7.72
	지방채	1,150	1,15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116	17,936	25,180	140.39
	계	1,600	1,600	0	0
특 별 회 계	세외수입	190	190	0	0
	경상적세외수입	2	2	0	0
	임시적세외수입	188	188	0	0
	보조금	706	706	0	0
	국고보조금등	565	565	0	0
	사·도비보조금등	141	141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3	703	0	0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1,000	880,200	120,800	13.72
일반회계	계	999,400	878,600	120,800	13.75
	일반공공행정	46,721	44,987	1,734	3.85
	공공질서및안전	6,135	6,162	△27	△0.44
	교육	13,240	13,096	144	1.10
	문화및관광	63,088	46,003	17,086	37.14
	환경	27,301	27,047	254	0.94
	사회복지	373,552	357,954	15,598	4.36
	보건	29,180	29,700	△520	△1.75
	농림해양수산	67,651	59,179	8,472	14.32
	산업·중소기업	3,300	3,663	△363	△9.93
	교통및물류	123,926	102,727	21,199	20.64
	국토및지역개발	79,960	76,956	3,004	3.90
	예비비	15,192	8,856	6,336	71.55
	기타	150,152	102,268	47,884	46.82
특별회계	계	1,600	1,600	0	0
	사회복지	598	598	0	0
	국토및지역개발	355	355	0	0
	기타	647	647	0	0

■ 조 직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1,000	880,200	120,800	13.72
일 반 회 계	계	999,400	878,600	120,800	13.75
	본청	911,138	790,304	120,833	15.29
	기획예산실	78,495	28,765	49,730	172.89
	법무감사실	393	391	2	0.41
	자치행정국	77,924	76,758	1,166	1.52
	자치행정과	63,497	63,478	19	0.03
	세무과	753	753	-	0.03
	징수과	663	620	43	7.06
	회계과	4,921	4,461	459	10.29
	종합민원과	645	645	0	0
	정보통신과	7,444	6,800	644	9.46
	경제환경국	91,934	87,757	4,177	4.76
	일자리경제과	10,366	10,125	242	2.39
	환경과	3,849	3,767	82	2.17
	농업정책과	20,748	18,768	1,980	10.55
	청소위생과	25,443	25,171	272	1.08
	공원녹지과	31,528	29,926	1,602	5.35
	주민복지국	401,038	377,295	23,743	6.29
	복지정책과	218,173	212,400	5,773	2.72
	생활보장과	52,531	47,232	5,299	11.22
	희망지원과	94,575	88,170	6,405	7.26
	교통과	35,759	29,493	6,266	21.24
	건설도시국	174,696	150,602	24,095	16.00
	건설과	88,714	73,714	15,000	20.35
	안전방재과	25,263	22,759	2,504	11.00
	도시과	28,277	27,806	471	1.69
	도시정비과	29,070	22,978	6,092	26.51
	건축과	1,529	1,503	26	1.72
	토지정보과	1,844	1,842	2	0.14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정책관광국	86,658	68,737	17,920	26.07
		정책사업과	33,328	23,872	9,456	39.61
		문화체육과	22,717	15,827	6,890	43.53
		관광과	9,626	8,766	860	9.81
		교육청소년과	20,986	20,272	714	3.52
	직속기관		49,072	49,341	△269	△0.55
		보건소	35,826	35,549	277	0.78
		보건과	17,805	18,064	△259	△1.43
		건강증진과	18,020	17,485	535	3.06
	농업기술센터		13,246	13,792	△546	△3.96
	의회		2,317	2,222	95	4.30
		의회사무국	2,317	2,222	95	4.30
	읍면동		36,874	36,733	141	0.38
		화원읍	5,990	5,989	1	0.02
		논공읍	4,382	4,382	0	0
		다사읍	6,201	6,139	63	1.02
		유가읍	3,986	3,986	0	0
		옥포읍	3,884	3,873	11	0.28
		현풍읍	3,801	3,795	6	0.16
		가창면	2,857	2,810	47	1.68
		하빈면	2,576	2,586	△10	△0.37
		구지면	3,197	3,174	22	0.70
특 별 회 계	계		1,600	1,600	0	0
	본청		1,600	1,600	0	0
		생활보장과	949	949	0	0
		안전방재과	651	651	0	0
		도시과	0	0	0	0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1,000	880,200	120,800	13.72
일 반 회 계	계	999,400	878,600	120,800	13.75
	인건비	91,165	91,089	76	0.08
	물건비	44,368	42,923	1,445	3.37
	경상이전	497,679	483,813	13,866	2.87
	자본지출	296,905	246,147	50,758	20.62
	시설비및부대비	273,201	244,024	49,177	21.95
	민간자본이전	12,731	11,945	786	6.58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861	4,826	35	0.72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384	1,266	117	9.24
	자산취득비	4,729	4,044	658	16.95
	기타자본이전	0	42	△42	순감
	내부거래	44,882	1,882	43,000	2285.14
	예비비및기타	24,401	1,2747	11,655	91.43
	예비비	15,192	8,856	6,336	71.55
	반환금기타	9,209	3,891	5,318	136.69
특 별 회 계	계	1,600	1,600	0	0
	인건비	392	392	0	0
	물건비	41	41	0	0
	경상이전	590	590	0	0
	자본지출	91	91	0	0
	예비비및기타	486	486	0	0
	예비비	243	243	0	0
	반환금기타	243	243	0	0

4)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경영지원팀)	920	1,025	105	
기획예산실	마을가꾸기 시상 사업	0	190	190	
기획예산실	예비비	3,000	9,315	6,315	
기획예산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0	43,000	43,000	
회계과	청사시설물 긴급보수비	189	339	150	
회계과	행정동 8층 리모델링 공사	0	195	195	
정보통신과	CCTV 영상정보 군 공유체계 구축	0	65	65	
정보통신과	다목적용 CCTV 설치	310	710	400	
정보통신과	CCTV 재정비 사업	160	285	125	
일자리경제과	달성청년혁신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0	100	100	
일자리경제과	달성청년혁신센터 내부 집기비품 구입	0	240	240	
농업정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0	1,253	1,253	보조
농업정책과	가축살처분 보상금지원	129	281	152	보조
청소위생과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100	150	50	
청소위생과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0	60	60	
공원녹지과	등산로 신설 및 정비	318	368	50	
공원녹지과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0	70	70	보조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21명)	277	387	110	보조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헬기임차	700	920	220	보조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카메라 구입 및 설치	0	300	300	
공원녹지과	다목적 산불진화 방제기 구입	0	50	50	
공원녹지과	피해고사목 방제	361	421	60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공원녹지과	매개충 산란처 제거사업	500	800	300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34	6284	944	보조
공원녹지과	산불예방 숲가꾸기(200ha)	0	725	7254	보조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696	828	133	
복지정책과	유치곤장군 호국기념관 건립	134	1,167	1,033	
복지정책과	기초연금 지급	78,710	79,605	895	보조
복지정책과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예산성립전 사용)	0	50	50	보조
복지정책과	경로당 개보수 지원	200	400	200	
복지정책과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용품 등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62	62	보조
복지정책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가족센터) 건립	1,145	1,374	229	보조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990	35,330	340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096	7,602	506	보조
복지정책과	영아수당 지원	4,155	4,259	104	보조
복지정책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0	150	150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094	16,765	672	보조
복지정책과	2022년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125	125	보조
복지정책과	보조교사 지원	3,798	4,041	243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사무기기 지원사업	0	64	64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예산성립전 사용)	0	4,478	4,478	보조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예산성립전 사용)	0	220	220	보조
희망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2,321	2,846	525	보조
희망지원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3,923	16,993	3,070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2,844	2,981	137	보조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희망지원과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및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0	120	120	보조
희망지원과	활동보조 가산수당(예산성립전 사용)	54	147	93	보조
희망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	0	50	50	
희망지원과	아동급식(조식식)지원	507	1,273	766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방학중 중식)지원	490	730	240	보조
교통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510	18,510	6,000	보조
건설과	미지급용지 보상비	300	600	300	
건설과	화원 구라리(89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	1,600	100	
건설과	화원 구라리(산5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0	3,700	1,200	
건설과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	1,800	1,000	
건설과	달성군청~옥포강림임대주택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650	300	
건설과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0	50	50	
건설과	다사 서동초교 앞 통학로 개설공사	250	310	60	
건설과	다사 서재리 서재초등학교 남편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0	1,250	50	
건설과	다사 서재리 선진섬유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29	129	
건설과	유가 유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99	199	
건설과	옥포 신당리 1351번지선 도시계획도로개설	750	1,150	400	
건설과	옥포 강림1리 금봉지 동편 도시계획도 로 개설	700	799	99	
건설과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500	750	250	
건설과	가창 행정리(511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800	100	
건설과	가창 옥분리(파티마요양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1,750	750	
건설과	가창 상원2리(43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30	2,530	1,500	
건설과	가창 우록 동회관~백록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성립전 사용)	1,300	5,100	3,8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건설과	가창 삼산리(37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	70	
건설과	가창 단산리(80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건설과	하빈 무등1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469	619	150	
건설과	구지 창리(331-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346	99	
건설과	구지 고봉리(122-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450	100	
건설과	도시관리계획 신설 및 변경	300	400	100	
건설과	비슬산 휴양림도로 확포장	4,000	4,500	500	
건설과	옥포 미진이지비아 북편 연결도로 개설공사	0	278	278	
건설과	하빈 하산2리 540번지선(하산교회 앞) 마을안길 정비	330	500	170	
건설과	유가 초곡리 189-2번지선 도로확장	300	600	300	
건설과	노후도로 포장 덧씌우기	500	800	300	
건설과	도로 긴급보수비	500	1,150	650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2,000	3,495	1,495	
건설과	유가 양2리(중외마을) 도로확포장	30	230	200	
건설과	구지 목단리 454번지선 도로정비	10	110	100	
건설과	화원읍 성산리 744-14번지 일원 데크로드 설치	0	350	350	
건설과	논공 금포리 1061-1번지 일원 암거박스 설치공사	0	79	79	
건설과	논공중앙로 남편 인도정비공사	0	248	248	
안전방재과	환경정비	1,194	1,394	200	
안전방재과	가창 행정리 1061-7번지선 흥덕소하천 정비공사	496	996	500	
안전방재과	논공 하리 524번지선 하리소하천 정비공사	120	220	100	
안전방재과	옥포 기세리 572번지선 기세소하천 정비공사	80	449	369	
안전방재과	가창 대일리 360-3번지선 대일소하천 정비공사	30	130	1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안전방재과	유가 초곡리 596-2번지선 초곡소하천 정비공사	30	580	550	
안전방재과	가창 정대리 295-2번지선 한듬곡소하천 정비공사	0	550	550	
안전방재과	현풍 성하리 725-77번지 현풍천 제방사면 정비	0	120	120	
도시과	옥포 송촌리 산2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220	380	160	
도시과	용금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0	50	50	
도시과	달성군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0	65	65	
도시정비과	하수도 긴급 보수	200	450	250	
도시정비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50	650	200	
도시정비과	저수지 유지관리	200	300	100	
도시정비과	국유재산 및 미지급(미불) 용지 보상	200	400	200	
도시정비과	가뭄대책 농업용수공급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100	100	보조
도시정비과	가창 옥분리(386번지선) 농로개설공사	200	450	250	
도시정비과	논공 노이리(647번지선) 농로개설공사	250	430	180	
도시정비과	옥포 송촌리(61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150	150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리(1556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800	800	
도시정비과	가창 주리(20번지선) 농로개설공사	230	430	200	
도시정비과	하빈 감문리(897-4번지선 외 1개소) 농로개설공사	0	100	100	
도시정비과	하빈 하산리(20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50	120	70	
도시정비과	구지 응암리(22번지선) 농로확포장공사	0	300	300	
도시정비과	가창 상원리(54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50	250	100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리(2292번지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80	320	240	
도시정비과	유가 한정1리(596-34번지선) 용배수로 개체공사	250	450	200	
도시정비과	하빈 무등2리(1570-16번지선) 용배수로 정비공사	180	260	8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도시정비과	논공 노이리(산225번지선) 구거정비공사	80	150	70	
도시정비과	하빈 대평1리(62번지선) 농로개설공사	80	130	50	
도시정비과	하빈 동곡2리(366-10번지선) 농로개설공사	80	280	200	
도시정비과	구지 고봉리(434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00	310	210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2리(100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100	230	130	
도시정비과	논공 하동지 방수로 정비공사	150	200	50	
도시정비과	옥포 반송리(484-3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200	200	
도시정비과	유가 본말1리 중앙농로개설공사	0	800	800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리(45번지선) 농로개설공사	0	80	80	
도시정비과	화원 설화리 350-1번지 일원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0	200	200	
도시정비과	옥포 반송리(333-2번지선) 암반관정 설치공사	0	80	80	
도시정비과	논공 금포리 외 1개소 암반관정 설치공사		160	160	
도시정비과	양.배수장 유지관리	200	300	100	
정책사업과	시설관리공단(송해기념관) 경상 전출금	30	90	60	
정책사업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5,000	13,924	8,924	
문화체육과	향토문화제 육성 및 지원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80	80	보조
문화체육과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건립공사	0	5,000	5,000	
문화체육과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공사	400	650	250	
문화체육과	위천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120	120	
문화체육과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0	870	870	
문화체육과	하빈지구체육시설 개보수 사업(기본구상)	22	88	66	
문화체육과	관내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및 교체	0	130	130	
문화체육과	가창 용계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리모델링 사업		200	200	

부서명	사 업 명	기정액	제2회 추경(안)	증감액	비고
관광과	시설관리공단(사문진역사공원) 경상 전출금	1,161	1,371	210	
관광과	손실보상금	0	400	400	
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80	220	140	
관광과	남평문씨본리세거지 수봉고택 보수정비	351	416	65	보조
교육청소년과	달성 영어체험 방학캠프	0	75	75	
교육청소년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대구예아람)	0	70	70	보조
교육청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출연	3,000	3,512	512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02억원 보다 1,208억원(증 13.72%)이 증가된 1조 10억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786억원 보다 1,208억원이 증액된 9,994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16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7억원, 지방교부세 668억원, 조정 교부금 17억원, 국시비보조금 234억원, 보전수입 25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93억원,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50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정비사업 43건 112억원, 소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56건 85억원, 기타 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복지분야 132억원, 비료 가격 안정 등 농업·임야분야 22억원, 교통·산업·도시분야 101억원 등 25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이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802억원보다 1,208억원 증액된 1조 10억원으로,
- 세입부문에서는 정부예산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국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금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역점추진사업과 도로 정비, 하천 및 농로정비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일반회계 여유재원(43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금 : 증 430억원

- (지출계획)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 증 430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입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43,000	0	43,000
지출계획	·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47,492	104,492	43,000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여유재원(43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계획이 430억원이 증액되고, 예치금 지출계획이 기정액 1,044억 9천만원에서 430억원 증액되어 1,47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기금 운영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2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3. 제안사유

-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외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4조)
-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비밀엄수(안 제5조)

5.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아동복지법」 등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3조에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에는 사업추진 및 지원으로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사무 위탁, 예산 지원을 규정
- 안 제5조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한 심리적 외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 건강한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또는 과거에 받았던 심리적인 상처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련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속하고 적합한 지원으로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5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약칭: 청소년복지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8호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2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3. 폐지사유

-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입지 선정이 2019년 12월에 타 지자체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본 조례의 목적성 상실로 이에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5.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폐지이유

대구광역시 신청사의 달성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유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2일

2. 제 출 자 : 전홍배 의원

3.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18086호, 2021. 4. 20. 시행) 개정
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명시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료 감면 사항 추가(안 제3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서 정하는 공유재산 임대 감면 규정 추가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7조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의 주민공개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을 추가(신설)
- 안 제3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100분의 80으로 감면율 추가(신설)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비한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체계적인 충전시설 유지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 7. 27.)으로 기축 공공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발생함

- 기축 공공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시설 및 설치 비율
 - 대상시설 : 주차면 50면 이상
 - 설치비율 : 주차면 총수의 2%

구 분		공 공 시 설	공중 이용시설	아 파 트
의무설치 대상 시설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 (변경) 주차면 50면 이상	(기존) 주차면 100면 이상 (변경) 주차면 50면 이상	(기존) 500세대 이상 (변경) 100세대 이상
충전 시설 설치 수량	신축 시설	(기존) 200면당 충전시설 1기 (변경) 주차면 총수의 5%	(기존) 100면당 충전시설 1기 (변경) 주차면 총수의 5%	(기존) 100면당 충전시설 1기 (변경) 주차면 총수의 5%
	기축 시설 (유예기간)	(신설) 주차면 총수의 2% (1년)	(신설) 주차면 총수의 2% (2년)	(신설) 주차면 총수의 2% (3년)

※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 불입 1. 조례안 1부.
-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방법·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

제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하되, 시행일 이후의 사용 또는 대부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u>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u>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방법·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u>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생략) <신 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u>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따른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개정된 가격”이란 법 제46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2일

2. 제 출 자 : 박영동 의원

3. 제안사유

-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달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 제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안 제12조 ~ 제17조)
-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등(안 제18조 ~ 제27조)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안 제29조)

5.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제정이유

달성군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21. 9. 24.제정, '22. 3.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현행 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지됨**

○ 주요내용

- 안 제3조 ~ 제5조 기본원칙, 군수의 책무,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 안 제7조 ~ 제8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안 제10조 ~ 제16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설치 등
- 안 제17조 ~ 제26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등
- 안 제27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2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함
- 안 부칙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함

< 대구광역시 달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 (구성) 위원장 1명(부군수) 포함 15명 이내,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 (임기) 2년 /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 [심의·의결사항]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② 지역비전 및 감축 목표의 설정 ③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 ④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⑥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⑦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토의견

- 기후위기의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 시행에 있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라 달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교통, 산업, 에너지 등의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달성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의 구현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에너지 절약·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관내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의 설정) ① 군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역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과 대구광역시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기본계획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에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 또는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대면회의의 개최가 현저히 어렵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7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군에 소재한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교통부문) ① 군수는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수송수단의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유지·관리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관리·운영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1조(산업부문) ① 군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에너지부문)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절약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친환경보일러,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순환 부문) ①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자원순환시설의 확대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탄소흡수원 부문)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 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목·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 조림(造林)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부문) ① 군수는 생활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배포 등 군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의 동참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상향식 실천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 시민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사항 발굴 추진
2.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확산 및 홍보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③ 군수는 탄소중립 및 환경관련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환경관련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3.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교육부문)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이 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평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 등

제2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① 군수는 군민 및 기업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과 기업이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녹색성장 추진계

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및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2일

2. 제 출 자 : 양은숙 의원

3. 제안사유

-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달성군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 상해보험료 지원내용(안 제4조)
-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안 제5조)

5. 관계법령

- 「병역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군복무 중인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에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에는 매년 보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의 범위 및 중복지원 불가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군복무 중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상해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보험금 청구는 개인별로 군과 계약한 보험사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제도의 비인지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세심한 관리가 요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 향후에는 사업추진의 사후평가가 병행되어야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국 단위 개정사항 :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 명칭변경 : 주민복지국 → 교육복지국, 정책관광국 → 문화관광국
- 과 단위 등 개정사항 :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 제9조
 - 정책추진단 : 신설(정책사업, S자형관광벨트, 청년혁신, 전략시설)
 - 교 통 과 : 국이동(교육복지국 → 경제환경국)
 - 교육청소년과 : 국이동(문화관광국 → 교육복지국), 변경(교육정책과)
 - 안전방재과 : 변경(안전총괄과)
 - 도 시 과 : 변경(도시계획과)
 - 정책사업과 : 폐지
 - 문화체육과 : 변경(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 신설(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공원녹지과 : 국이동(경제환경국 → 문화관광국)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4조 ~ 제9조
- 기획예산실 : 변경(군정홍보 → 홍보)
- 자치행정과 : 부서이동(민방위 → 안전총괄과 이관)
- 일자리경제과 : 변경(경제노동 → 지역경제, 청정에너지 → 에너지 관리, 지역공동체 → 사회적경제)
- 청소위생과 : 신설(재활용), 변경(자원순환 → 폐기물관리)
- 교육정책과 : 변경(교육정책 → 교육기획)
- 복지정책과 : 변경 및 부서이동(보육시설→보육, 교육정책과 이관)
- 안전총괄과 : 통폐합(안전기획+사회재난 → 안전관리)
- 도시정비과 : 변경(전기 → 전기시설)
- 건축과 : 신설(건축물관리)
- 문화예술과 : 부서이동(체육진흥→체육진흥과), 변경(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 체육진흥과 : 신설(공공·생활체육시설)
- 관광과 : 변경(관광마케팅 → 관광콘텐츠), 신설(관광시설), 부서이동(문화재 → 문화예술과)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14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중 7건의 의견서 접수에 따른 의견 내용을 조례(안)에 미반영
- 의견내용 : 국 명칭과 부서 순서 및 신설 등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7조, 제9조 국 단위 개정사항에 관한 규정
 - 명칭변경 : 주민복지국 → 교육복지국, 정책관광국 → 문화관광국
- 안 제2조,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 정책추진단과 4개팀 (정책사업, S자형관광벨트, 청년혁신, 전략시설) 신설
- 안 제6조 ~ 제9조 과 단위 개정사항에 관한 규정
 - 교 통 과 : 국이동(교육복지국 → 경제환경국)
 - 교육청소년과 : 국이동(문화관광국 → 교육복지국), 변경(교육정책과)
 - 안전방재과 : 변경(안전총괄과)
 - 도 시 과 : 변경(도시계획과)
 - 정책사업과 : 폐지
 - 문화체육과 : 변경(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 신설(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 공원녹지과 : 국이동(경제환경국 → 문화관광국)
- 안 제4조 ~ 제9조 팀 단위 개정사항에 관한 규정
 - 기획예산실 : 변경(군정홍보 → 홍보)
 - 자치행정과 : 부서이동(민방위 → 안전총괄과 이관)
 - 일자리경제과 : 변경(경제노정 → 지역경제, 청정에너지 → 에너지 관리, 지역공동체 → 사회적경제)
 - 청소위생과 : 신설(재활용), 변경(자원순환 → 폐기물관리)
 - 교육정책과 : 변경(교육정책 → 교육기획)
 - 복지정책과 : 변경 및 부서이동(보육시설→보육, 교육정책과 이관)

- 안전총괄과 : 통폐합(안전기획+사회재난 → 안전관리)
- 도시정비과 : 변경(전기 → 전기시설)
- 건축과 : 신설(건축물관리)
- 문화예술과 : 부서이동(체육진흥→체육진흥과), 변경(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 체육진흥과 : 신설(공공·생활체육시설)
- 관광과 : 변경(관광마케팅 → 관광콘텐츠), 신설(관광시설), 부서이동(문화재 → 문화예술과)

※ 부칙 제1조(시행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둔 행정기구 개편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을 “(국장 및 실·단·과·소장 등의 직급 등)” 으로 하고, 제목 외 부분 중 “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을 “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으로 한다.

제3조(국의 설치) 중 “주민복지국” 을 “교육복지국” 으로 하고, “정책관광국” 을 “문화관광국” 으로 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제1항 중 “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 을 “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정책추진단” 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군정홍보·예산·지역인구정책·혁신평가·서울사무소” 를 “기획·예산·홍보·혁신평가” 로 하며, 제4항을 “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S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로 신설한다.

제5조(자치행정국)제2항제1호 중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민방위” 를 “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 하고, 제5호 중 “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신고·도시건설민원에 관한 사항” 을 “민원·공장농지·건축허가·도시건설 등 민원에 관한 사항” 으로 하며, 제7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제6조(경제환경국)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공원녹지과” 를 “일자리경제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노동·청정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 를 “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 로 하고, 제2호 중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 을 “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 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 을 “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 으로 하고, 제4호 중 “청소행정·자원순환·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 을 “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 으로 하며, 제5호 중 “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 를 “청소행정·재활용·폐기물관리·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주민복지국)” 을 “(교육복지국)” 으로 하고, 제1항 중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교통과” 를 “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 을 “교육복지국장” 으로 하고, 제1호 중 “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보육시설” 을 “교육기획·보육·평생교육·청소년” 으로 하고, 제2호 중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 를 “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 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 를 “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 로 하고, 제4호를 “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으로 신설하며, 제7호는 삭제한다.

제8조(건설도시국)제1항 중 “안전방재과·도시과” 를 “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안전기획·중대재해예방·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 를 “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 로 하고, 제4호 중 “전기” 를 “전기시설” 로 하며,

제7호 중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 을 “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 제5호로 변경하며, 제8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

제9조의 제목 “(정책관광국)” 을 “(문화관광국)” 으로 하고, 제1항 중 “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교육청소년과로” 를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공원녹지과를” 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관광국장” 을 “문화관광국장” 으로 하고, 제1호 중 “정책사업·공공사업·공공개발·민자개발” 을 “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 로 하며, 제2호를 “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로 신설한다.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예술·체육진흥·문화체육시설” 을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 로 하고, 제4호 중 “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재” 를 “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 로 하며, 제5호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 을 “교육복지국장” 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을 “5개 국장” 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 을 “교육복지국장” 으로 한다.

-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 및 정책관광국장” 을 “교육복지국장 및 문화관광국장” 으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 을 “교육복지국장” 으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정책관광국장” 을 “문화관광국장” 으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정책사업과장” 을 “정책추진단장” 으로 하고, “도시과장”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도시과장” 을 “도시계획과장” 으로 한다.
-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방재과장” 을 “안전총괄과장” 으로 한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 을 “체육진흥과장” 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책관광국장” 을 “문화관광국장” 으로 하며, “문화체육과장” 을 “체육진흥과장” 으로 한다.
-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정책관광국장” 을 “문화관광국장” 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을 “체육진흥과장” 으로 하며,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관광국장” 을 “문화관광국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u>실장, 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u> ,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단·과·소장 등의 직급 등) ----- ----- <u>실장, 단장, 과장, 직속 기관의 소장 및 과장</u> ,----- ----- -----.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 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경제환경국· <u>주민복지국·건설도시국·정책관광국</u> 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u>교육복지국·-----문화관광국</u>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 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u>기획예산 실·법무감사실</u> 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u>기획·군정홍보·예 산·지역인구정책·혁신평가·서울사무소</u> 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생략)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 기관의 설치) ① ----- <u>기획예 산실·법무감사실·정책추진단</u> ----- ② ----- <u>기획·예산·홍보·혁신 평가</u>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설) <u>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S 자형관광벨트·청년혁신·전략시설에 관 한 사항을 분장한다.</u>
제5조(자치행정국) ① (생략) ② (생략) 1. <u>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민 방위</u> 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u>민원·공장농지민원·건축허가·건축 신고·도시건설민원</u> 에 관한 사항 7. <u>정보통계·기록물·전산·통신·통합 관제</u> 에 관한 사항	제5조(자치행정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총무·인사교육·자치행정·직원복지</u> ----- ----- 2. ~ 4. (현행과 같음) 5. <u>민원·공장농지·건축허가·도시건설 등 민원</u> 에 관한 사항 6. ----- -----

현행	개정안
제6조(경제환경국) ① <u>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공원녹지과를 둔다.</u> ② (생략) 1. <u>경제노동·청정에너지·기업지원·일자리창출·지역공동체</u> 에 관한 사항 2. <u>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u> 에 관한 사항 3. <u>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u> 에 관한 사항 4. <u>청소행정·자원순환·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u> 에 관한 사항 5. <u>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u> 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환경국) ① ----- <u>일자리경제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u> ----. ② (현행과 같음) 1. <u>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u> ----- 2.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u> ----- 3. <u>환경관리·대기·수질·수자원</u> ----- 4. <u>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u> ----- 5. <u>청소행정·재활용·폐기물관리·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u> -----
제7조(주민복지국) ① <u>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교통과를 둔다.</u> ② <u>주민복지국장</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보육시설</u> 에 관한 사항 2. <u>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u> 에 관한 사항 3.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u> 에 관한 사항 7. <u>교통행정·교통지도·교통시설·차량관리·차량등록·교통특사경</u> 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복지국) ① <u>교육복지국에 교육정책과·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희망지원과</u> ----. ② <u>교육복지국장</u> ----- -----. 1. <u>교육기획·보육·평생교육·청소년</u> ----- -- 2. <u>복지기획·노인복지·여성가족</u> ----- 3. <u>기초생활보장·복지조사·복지관리·주거의료복지</u> ----- 4. (신설) <u>복지나눔·복지연계·장애인복지·드림스타트·아동보호</u> 에 관한 사항 7.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u>안전방재과</u>·<u>도시과</u>·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생략) 1. (생략) 2. <u>안전기획·중대재해예방·사회재난·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u>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가로정비·하수시설·농업시설·<u>전기</u>에 관한 사항 7.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u> 8. 토지관리·지적·지적재조사·지가정보·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제8조(건설도시국) ① ----- -----<u>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u>-----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민방위·자연재난·하천시설·하천관리</u>----- 3. (현행과 같음) 4. -----<u>전기시설</u>----- 5. <u>건축행정·주택·공동주택관리·공공시설·건축물관리</u>에 관한 사항 6. ----- -----
제9조(정책관광국) ① <u>정책관광국에 정책사업과·문화체육과·관광과·교육청소년과</u>로 둔다. ② <u>정책관광국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정책사업·공공사업·공공개발·민자개발</u>에 관한 사항 3. <u>문화예술·체육진흥·문화체육시설</u>에 관한 사항 4. <u>관광정책·관광마케팅·관광개발·문화재</u>에 관한 사항 5. <u>교육정책·평생교육·청소년</u>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관광국) ① <u>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공원녹지과</u>를 -----. ② <u>문화관광국장</u>----- -----. 1. <u>문화예술·문화시설·문화재</u>----- - 2. (신설) <u>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u>에 관한 사항 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관광시설</u>----- 4. <u>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u>----- 5. (삭제)

【별 표】

읍 ·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 수 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2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 같은법시행령 제6조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30조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1조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나. 유류금품의 처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희망지원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있는 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
안전총괄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도시계획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공원녹지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06명 → 1,015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989명 → 998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별표 2]
 - 별정직 공무원 : 6급상당(100% → 70% 이내), 7급상당(0% → 30% 이상)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별표 3]
 - 총 정원 : 1,006명 → 1,015명
 - 본청 정원 : 644명 → 653명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06명 → 1,015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989명 → 998명

- [별표 2]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

· 별정직 공무원 : 6급상당(100% → 70% 이내), 7급상당(0% → 30% 이상)

- [별표 3]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총 정원 : 1,006명 → 1,015명

· 본청 정원 : 644명 → 653명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 부칙 제1조(시행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검토의견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정원조정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됨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정원 조정내역(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 정원 조정내역(안) : 1,006명 ⇒ 1,015명(+9명)

구 분	부서명	인원		주요내용
재배치	계	▽35	+35	
	기획예산실	▽4	+4	- 정책추진단 2명, 교육정책과 2명 재배치
	자치행정과	▽3	+3	- 체육진흥과 1명, 정책추진단 2명 재배치
	회계과	▽1	+1	- 교육정책과 재배치
	청소위생과	▽2	+2	- 청소위생과·환경과 각 1명 재배치 ·운전7(1), 운전9(1) → 행정6(2) *청소위생과(1명) : 재활용팀 신설 *환경과(1명) : 전기차충전소 설치 및 지도 단속 강화 - 안전총괄과 1명 재배치 *재활용팀 신설
	건축과	▽1	+1	- 결원정원 도시계획과 재배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강화
	안전총괄과	▽3	+3	- 청소위생과 1명, 체육진흥과 재배치 2명
	정책사업과	▽20	+20	- 정책추진단 11명, 문화예술과 3명, 체육진흥과 4명, 관광과 2명
순증	다사읍	▽1	+1	- 다사읍 재배치 ·운전8(1) → 행정6(1) *인구,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강화
	계		+9	
	희망지원과		+1	- 사회복지6급 *긴급복지지원사업 업무 강화
	건축과		+3	- 시설(건축)6급 3명 *팀장(1), 건축사(1), 건축구조기술사(1) *건축물 관리팀 신설
	정책추진단		+1	- 시설(도시계획)7급 *정책추진단 업무 효율성 강화
	관광과		+3	- 시설(토목)7급 1명, 시설(건축)8급 2명 *관광시설팀 신설
	자치행정과		+1	- 별정직 7급상당 * 군수수행 비서(운전)
직렬변경	계	▽6	+6	
	도시정비과	▽1	+1	- 공업+전기운영6(1) → 공업6(1)
	교통과	▽1	+1	- 행정+세무7(1) → 행정7(1)
	세무과	▽2	+2	- 행정9(2) → 행정+세무9(2)
	회계과	▽1	+1	- 사무운영9(1) → 행정+시설9(1)
	안전총괄과	▽1	+1	- 행정+방재안전9(1) → 행정9(1)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6”을 “1,015”로 하고, 제1호 중 “989”을 “998”로 한다.

별표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 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 을 <u>1,006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989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015명</u> ----- -----. 1. ----- : <u>998명</u>

【 별 표 1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 표 2 】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5.9% 이내	28% 이내	30% 이내	27% 이내	8%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70% 이내	30% 이상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06 1,015	644 653	17	112	177	5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73 981	638 646	17	85	177	56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2	28	2	2	7	3
6급이하 계	922 930	604 612	14	82	169	53
연구직 계	3	3				
연 구 관						
연 구 사	3	3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별정직 계	23	23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0 1	0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

2. 비용 발생 요인

공무원 증원 9명(6급 +7, 7급 +2, 8급 +1 9급 -1)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연도별 비용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3,067,691천원 정도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3,067,691천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3,067,691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따로 붙임

6. 작성자 : 기획예산실 기획팀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568,647	590,256	612,686	635,968	660,134	3,067,691
지 방 세		568,647	590,256	612,686	635,968	660,134	3,067,691
의존재원							
세 출		568,647	590,256	612,686	635,968	660,134	3,067,691
인 건 비		568,647	590,256	612,686	635,968	660,134	3,067,691
재원 조달		568,647	590,256	612,686	635,968	660,134	3,067,691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군 비		568,647	590,256	612,686	635,968	660,134	3,067,691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민선8기 군정 철학이 담긴 새로운 슬로건의 확정으로 군 슬로건을 변경하고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군 슬로건 변경(안 별표8)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민선8기 새로운 슬로건의 확정으로 군 슬로건을 변경하고 상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별표8 군 슬로건 변경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8]

슬로건(slogan)

1. 슬로건

가로형	세로형
	

2. 그리드(grid)

가로형	세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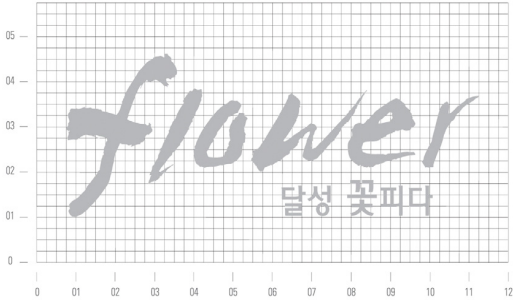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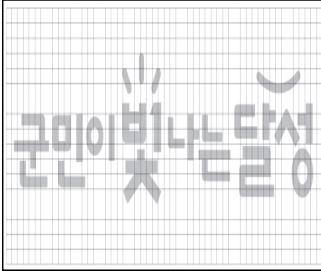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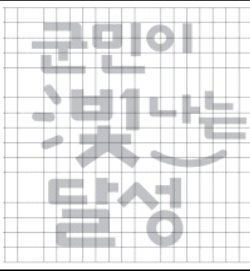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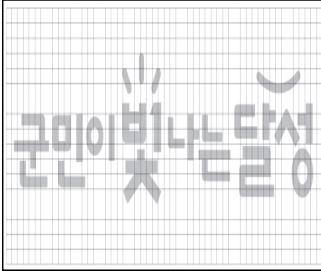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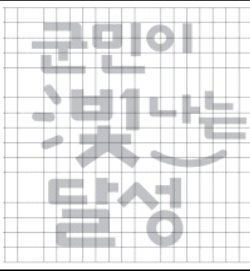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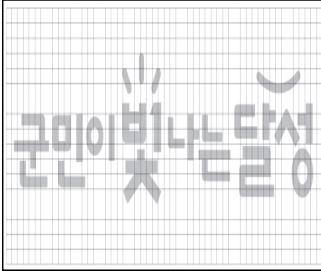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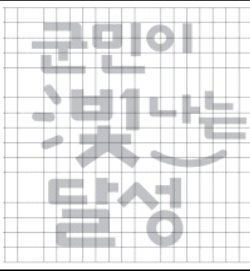
3. 슬로건 의미

민선8기 군정슬로건에는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군민을 섬기며, 획기적인 혁신과 능동적 변화의 실천을 다짐하며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 디자인 의미

군민들에게 빛이 나는 넘버1의 희망과 미소를 전달하는 역동적인 달성의 이미지 표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8] 슬로건(slogan) 가. 슬로건  나. 그리드(grid)  ■ 슬로건 설명 flower 꽃분홍색은 희망과 따뜻한 배려를 담고 있으며, 캘리그래피로 표현하여 친근하고 개성이 넘친다. 달성은 비슬산 참꽃으로 연상되는 꽃 이미지의 도시다. 달성에서 꽃 피운 비슬산 참꽃 개화 이상의 의미로 쾌적한 환경, 경제 활성화, 성숙된 군민정서, 첨단과학 등 달성군정이 보다 원만하게 총체적 성과를 이뤄냄을 뜻한다.	[별표8] 슬로건(slogan) 1. 슬로건 <table border="1"> <thead> <tr> <th>가로형</th><th>세로형</th></tr> </thead> <tbody> <tr> <td></td><td></td></tr> </tbody> </table> 2. 그리드(grid) <table border="1"> <thead> <tr> <th>가로형</th><th>세로형</th></tr> </thead> <tbody> <tr> <td></td><td></td></tr> </tbody> </table> 3. 슬로건 의미 민선8기 군정슬로건에는 달성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위해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군민을 섬기며, 획기적인 혁신과 능동적 변화의 실천을 다짐하며 “대구의 심장, 달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달성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 디자인 의미 군민들에게 빛이 나는 넘버1의 희망과 미소를 전달하는 역동적인 달성의 이미지 표현	가로형	세로형			가로형	세로형		
가로형	세로형								
									
가로형	세로형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리 분리·신설

행정리	공동주택명(세대수)	지 번	입주예정
천내18리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셀 (538)	천내리 690-1	'22. 09.
설화 3리	화원신일해피트리 꿈의숲 (553)	설화리 975	'22. 08.

○ 유가읍 한정2리 3반 일부 주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한정1리로 되어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민 건의사항)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2리 중(324리 ⇨ 326리), 20반 중(2,794반 ⇨ 2,814반)

읍·면	기 존		개 정		증 감			비고
	행정리	반 수	행 정 리	반 수	리	반	이장정수	
화원읍	<신설>		천 내 1 8 리 (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9	1	9	1	538세대
	<신설>		설 화 3 리 (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1	1	11	1	553세대

○ 지번정비 : 한정2리의 누락된 지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지번정비

읍·면	행정리	현 행	조 정	증 감
		세대수(인구수)	세대수(인구수)	세대수(인구수)
유가읍	한정1리	69 (123)	65 (116)	△4 (△7)
	한정2리	71 (115)	75 (122)	4 (7)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신규 공동주택(천내18리, 설화3리) 입주에 따른 행정리 분리·신설과 유가읍 한정2리(3반) 일부 주민의 누락된 지번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2개 행정리 증(324리 ⇨ 326리), 20개 반 증(2,794반 ⇨ 2,814반)
- 지번정비 : 한정2리(3반)의 누락된 지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정비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유가읍	한정2리	3	57~85	유가읍	한정2리	3	57~85, 596-2, 596-65~596-69, 596-84~596-90

○ 검토의견

-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행정리 신설과 일부 주민의 누락된 지번 정비는 주민의 편의제고와 불편사항 해소, 일선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화원읍 천내리란, 화원읍 설화리란 및 화원읍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천내리	18	천내1리
			천내2리
			천내3리
			천내4리
			천내5리
			천내6리
			천내7리
			천내8리
			천내9리
			천내10리
			천내11리
			천내12리
			천내13리
			천내14리
			천내15리

			천내16리 천내17리 천내18리
	설화리	3	설화1리 설화2리 설화3리
회원읍 소계	6	49	49

별표3 중 회원읍 천내17리란 다음에 천내18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회원읍	천내18리	제 1 반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1동 201호~2601호, 202호~2902호
		2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1동 303호~3303호, 304호~3304호
		3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1동 205호~3305호, 206호~3306호
		4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2동 201호~3301호, 202호~3302호
		5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2동 303호~3303호, 304호~3304호
		6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2동 205호~3305호, 206호~3306호
		7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3동 301호~3301호, 302호~3302호
		8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3동 203호~3003호, 204호~2704호
		9	천내리690-1번지(회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4동 201호~2701호, 202호~2702호

별표3 중 화원읍 설화2리란 다음에 설화3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화원읍	설화3리	제 1 반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1동 201호~2101호, 202호~2202호, 203호~2203호, 204호~1704호
		2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2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3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2동 203호~2203호, 204호~2204호, 205호~2205호, 206호~1706호
		4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3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5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3동 203호~2103호, 204호~2104호, 205호~1605호, 206호~1706호
		6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4동 201호~1901호, 202호~1702호, 203호~1403호
		7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5동 201호~1901호, 202호~1902호
		8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5동 203호~1903호, 204호~1904호, 205호~1905호
		9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6동 201호~1501호, 202호~1502호
		10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7동 201호~1901호, 202호~1902호
		11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7동 203호~1903호, 204호~1404호, 205호~1405호

별표3의 유가읍란 중 한정2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리	반	구 역
유가읍	한정2리	제 1 반	86~157
		2	219~270
		3	57~85, 596-2, 596-65~596-69, 596-84~596-9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화원읍	천내리	17	천내1리	화원읍	천내리	18	천내1리
			천내2리				천내2리
			천내3리				천내3리
			천내4리				천내4리
			천내5리				천내5리
			천내6리				천내6리
			천내7리				천내7리
			천내8리				천내8리
			천내9리				천내9리
			천내10리				천내10리
			천내11리				천내11리
			천내12리				천내12리
			천내13리				천내13리
			천내14리				천내14리
			천내15리				천내15리
			천내16리				천내16리
			천내17리				천내17리
	구라리	9	구라1리				천내18리
			구라2리		구라리	9	구라1리
			구라3리				구라2리
			구라4리				구라3리
			구라5리				구라4리
			구라6리				구라5리
			구라7리				구라6리
			구라8리				구라7리
			구라9리				구라8리
	성산리	6	성산1리				구라9리
			성산2리		성산리	6	성산1리
			성산3리				성산2리

				성 산4리					성 산3리
				성 산5리					성 산4리
				성 산6리					성 산5리
	설 화리	2		설 화1리		설 화리	3		설 화1리
				설 화2리					설 화2리
	본 리리	6		본 리1리		본 리리	6		설 화3리
				본 리2리					본 리1리
				본 리3리					본 리2리
				본 리4리					본 리3리
				본 리5리					본 리4리
				본 리6리					본 리5리
									본 리6리
화원읍 소계	6	47	47		화원읍 소계	6	49	49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화원읍	〈신설〉			화원읍	천내18리	제1반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1동 201호~2601호, 202호~2902호
						2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1동 303호~3303호, 304호~3304호
						3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1동 205호~3305호, 206호~3306호
						4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2동 201호~3301호, 202호~3302호
						5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2동 303호~3303호, 304호~3304호
						6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2동 205호~3305호, 206호~3306호
						7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3동 301호~3301호, 302호~3302호
						8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3동 203호~3003호, 204호~2704호
						9	천내리690-1번지(화원파크뷰우방아이유셀) 104동 201호~2701호, 202호~2702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화원읍	〈신설〉			화원읍	설화3리	제1반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1동 201호~2101호, 202호~2202호, 203호~2203호, 204호~1704호
						2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2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3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2동 203호~2203호, 204호~2204호, 205호~2205호, 206호~1706호
						4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3동 201호~2101호, 202호~2102호
						5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3동 203호~2103호, 204호~2104호, 205호~1605호, 206호~1706호
						6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4동 201호~1901호, 202호~1702호, 203호~1403호
						7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5동 201호~1901호, 202호~1902호
						8	설화리975(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5동 203호~1903호, 204호~1904호, 205호~1905호
						9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6동 201호~1501호, 202호~1502호
						10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7동 201호~1901호, 202호~1902호
						11	설화리975번지(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107동 203호~1903호, 204호~1404호, 205호~140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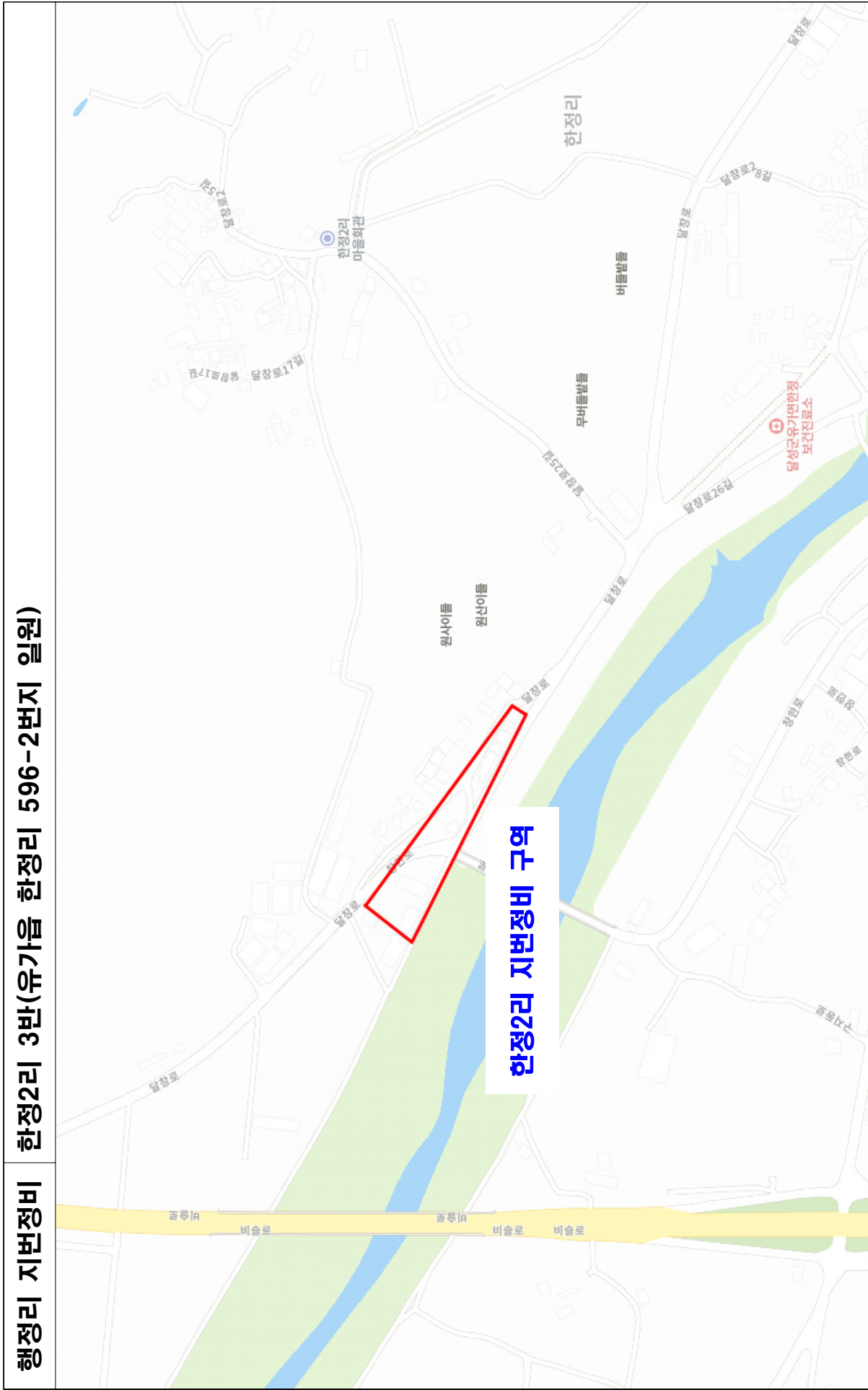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유가읍	한정2리	제1반	86~157	유가읍	한정2리	제1반	86~157
		2	219~270			2	219~270
		3	57~85			3	57~85, 596-2, 596-65~596-69, 596-84~596-90

참고 1

행정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신 설 전내18리[화원을 전내리 690-1]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청사시설(예식장)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중 예식 항목 삭제(안 제1조)
- 정의 중 예식장, 카페테리아 항목 삭제(안 제2조제1호)
- 대관의 범위 중 예식장 항목 삭제(안 제6조)
- 사용료의 감면에서 예식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제1항제3호, 제4호)
-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별표 수정(안 별표)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청사시설(예식장) 운영 종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 목적 중 예식 항목 삭제
- 안 제2조제1호 정의 중 예식장, 카페테리아 항목 삭제
- 안 제6조 대관의 범위 중 예식장 항목 삭제
- 안 제12조제1항제3호, 제4호 사용료의 감면에서 예식 관련 조항 삭제
- 안 별표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수정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이라 하고, “문화예술·강연회·예식 등”을 “문화예술·강연회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에 있는 대강당, 식당, 도서관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청사의 시설 및 설비”를 “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예식장, 대강당”을 “대강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u> 등을 개방하여 <u>문화예술·강연회·예식 등</u>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 시설물</u> 등을 ----- ----- <u>문화예술·강연회 등</u>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란 <u>예식장, 대강당, 식당,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u> 2. ~ 5. (생략)	제2조(정의) ----- ----- 1. “시설물”이란 <u>대구광역시 달성군청사에 있는 대강당, 식당, 도서관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u>기타의</u>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② ----- ----- ----- ----- <u>그 밖의</u> ----- ----- -----.

제6조(대관의 범위) <u>군청사의 시설</u> 및 <u>설비</u>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대관의 범위) <u>시설물</u> 중 ---- ----- -----.
1. 기본시설 : <u>예식장, 대강당</u> 등 과 그 부속시설	1. 기본시설 : <u>대강당</u> 등과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u> <u>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u> <u>장애인 본인의 예식</u>	<삭 제>
4. <u>신랑,신부 또는 혼주 중 1인이</u> <u>접수일 현재 달성군내 주민등록이</u> <u>되어 있는 자이거나 직장소재지가</u> <u>달성군 관내인 자의 예식</u>	<삭 제>
제17조(시설물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이용의 제한)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군수가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u>그 밖에</u> ----- -----

고 인정 하는 경우

제18조(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대출 및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1.(생략)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소지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별표]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1조 제1항 관련)

1.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원)	운 영 시 간	비 고
대 강 당	오 전	50,000	09:00~12:00	432석 (공연시설)
	오 후	70,000	13:00~17:00	
	야 간	90,000	18:00~22:00	
예 식 장	1회(2시간)	100,000	10:00~16:00	220석

2. 부속설비 사용료

설 비 명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냉 · 난 방	대 강 당	80,000	예식시 면제
	예 식 장	50,000	
피 아 노	1회	30,000	대강당
빔 프로젝터	1회	20,000	대강당
조 명	1회	25,000	대강당

1. 휴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시설물 사용료 기준 30%를 가산함(예식은 제외)
2. 연습,무대설비,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 시설물 사용료 기준 50%로 함.
3. 초과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0% 가산함.

-----.

제18조(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 ---

-----.

1. (현행과 같음)

2. -----

해당 -----

<삭 제>

[별표]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1조 제1항 관련)

1.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원)	운 영 시 간	비 고
대 강 당	오 전	50,000	09:00~12:00	423석 (공연시설)
	오 후	70,000	13:00~17:00	
	야 간	90,000	18:00~22:00	

2. 부속설비 사용료

설 비 명	기 준	사 용 료 (원)	비 고
냉 · 난 방	1회	80,000	대강당
피 아 노	1회	30,000	대강당
빔프로젝터	1회	20,000	대강당
조 명	1회	25,000	대강당

1. 휴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시설물 사용료 기준 30%를 가산함(예식은 제외)
2. 연습,무대설비,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 시설물 사용료 기준 50%로 함.
3. 초과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 마다 사용료의 20% 가산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청년혁신센터의 정의(안 제2조)
- 청년혁신센터의 기능(안 제4조)
- 청년혁신센터의 관리·운영 등(안 제5조)
- 청년혁신센터의 위탁운영 등(안 제6조)

5.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정이유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2조 청년혁신센터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 청년혁신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 청년혁신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6조 ~ 제12조 위탁운영, 비용 등 지원, 수탁자의 의무 등 정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은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행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혁신센터”란 청년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인 청년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청년혁신센터 내 창업 입주공간에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그 창업과 관련한 제4조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혁신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청년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군 관할구역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자 등”이라 한다)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2.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입주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3. 청년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년 창업 및 예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업에 따른 청년을 선정할 때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지원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관리·운영사무의 일부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센터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비용 등 지원) ① 군수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에게 창업 및 예비창업에 필요한 비용, 제4조 각 호 사업 내용에 따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관리·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공유재산, 물품 및 비용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리·운영현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 세부규정) ①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 및 제4조 각 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때에는 그 시행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제8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지휘·감독 결과 관리·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공익상 위탁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입주공간을 포함한 센터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훼손, 물품을 파손 또는 망실 하는 경우
2. 무단으로 입주공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3.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거나 지원되는 각 호 사업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구인·구직 등을 위한 취업 알선 또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5.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6.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7.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8. 창업 지원 사업
9.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10.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활동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 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라 달성군 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재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비용이 대략적으로 예측은 되나
-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한 그에 따른 각 세부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비용을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제정(2007. 12. 31.)된 지 오래된 위 조례를 상위법령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맞춰 개정하고 보조금 교부의 명시적인 근거 마련과 그 밖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5조에서 ‘사업에 대하여’를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로 수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 그밖의 용어 정비

5.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조례 제정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5조 중 “사업에 대하여” 를 ⇨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으로 수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추가함

○ 검토의견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한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달성군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달성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달성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공로가 있는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재향군인회 업무 교육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특별위로금 상향을 통해 복리 증진 및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원사업 중 특별위로금 금액 10만원 인상 (안 제3조 제4항)

5.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상향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3조 제4항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지급을 “연 30만원” 으로 10만원 인상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존경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연 20만원의”를 “연 30만원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사업)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 ③ (생략) ④ 참전유공자에게 <u>연 20만원의</u> 특 별 위로금 지급	제3조(지원사업) ----- ----- -----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연 30만원의</u> ----- -----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3년 ~ 계속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비용

2. 비용발생 요인

- 참전유공자 지원 특별위로금 10만원 증액

3. 관련조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비

나. 추계 결과 : 5년간 410,000천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업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410,0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붙임

6.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재천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지 방 세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의존재원							
세 출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특별위로금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재원 조달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지방세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 비		88,000	85,000	82,000	79,000	76,000	41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실질적 보상을 실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안 제4조)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안 제11조 제1항)

5.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접수(2022.8.29.)에 따른 의견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
 - 제4조, 제11조제1항 지원대상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내용 명확화 및 수당 지급 시기 명시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4조 중 ‘그 단체로 한다.’를 ⇨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조문 변경함

○ 검토의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우 및 지원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그 단체로 한다.”를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가보훈대상자에게”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11조 제1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해당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 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 ----- -----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 자의 경우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 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 급할 수 있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와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 ----- ----- ----- ----- -----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2년 ~ 계속
-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을 위한 비용

2. 비용발생 요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3. 관련조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및 제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사업비

나. 추계 결과 : 5년간 775,600천 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사업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775,600천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지 붙임

6.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재천

[별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 입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지 방 세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의존재원							
세 출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보훈예우수당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재원 조달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지방세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균 비		19,600	126,000	168,000	210,000	252,000	775,6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성공시키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달성군 청년혁신센터를 건립하고
- 창업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3조

5.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 위 치 : 화원읍 설화리 556-15외 1필지,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층 4층
 - 시설현황

시 설 명	층별	연면적	시 설 구 성	비 고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3층	259.08㎡	센터사무실, 스튜디오(영상제작실) 교육실, 공유공간, 취업안내센터	
	4층	259.08㎡	교육실, 소회의실(2), 공유공간, 입주사무실(4)	

- 위탁기간 : 협약체결시 ~ 3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 400백만원/년
- 추진일정
 - 2022. 10월 : 모집공고
 - 2022.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1월 : 달성 청년혁신센터 위탁운영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에서 추진중인 달성군 청년혁신센터는 관내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관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젊고 활력이 넘치는 달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중의 하나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성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센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센터운영에 관한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창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센터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을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화원시장 201호를 (재)달성복지재단의 비영리사업 운영을 위한 달성시니어클럽 사무실 및 달성군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제2의2호

5. 주요내용

-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사 용 자 : (재)달성복지재단
 - 허가재산 : 화원시장 201호(화원읍 비슬로512길 66)
 - 사용면적 : 783.03㎡(전용 596.43㎡, 공용 186.6㎡)
 - 면제적용 : 면제 동의안 의결 후 ~ 이전 시
 - 사용목적 :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

Ⅱ. 검토의견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동의안은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을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당초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로 사용한 화원시장 201호를 (재)달성복지재단의 비영리사업 운영을 위한 달성시니어클럽 사무실 및 달성군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음에 따라,
- (재)달성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 ③ :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 ⑦ : 생략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재)달성복지재단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제2의2호

5. 주요내용

-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사용기간 : 2022. 10. 1. ~ 이전시까지(5년 단위 재계약)
 - 이전장소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2층, 6층
 - 사용면적 : 총619.7㎡(2층 296.9, 6층 322.8)
 - 사용목적 :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 사용

II. 검토의견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동의안은 (재)달성복지재단 사무실을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2층과 6층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음에 따라,
-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재)달성문화재단이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제2의2호

5. 주요내용

- (재)달성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 사용기간 : 2022. 10. 1. ~ 이전시까지(5년 단위 재계약)
 - 이전장소 :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7층, 8층
 - 사용면적 : 총645.6㎡(7층 322.8, 8층 322.8)
 - 사용목적 : (재)달성문화재단 사무실 사용

II. 검토의견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동의안은 (재)달성문화재단 사무실을 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7층과 8층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2의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사용료 감면을 할 수 있음에 따라,
- (재)달성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관내 저소득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집중식 영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맞춤형 교육도시 구축 및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4. 관련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교육진흥 조례」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3조

5.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달성 영어체험 방학캠프
- 위탁대상 사무 : 달성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
 -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50명
 - 사업내용 : 12일 체험식 영어 집중 프로그램 운영 위탁
- 위탁내용
 - 방학캠프 프로그램 운영 전반
 -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원어민 강사 훈련 및 제공, 생활지도 등
 - 방학캠프 시설 제공 및 시설 내 학생 안전관리
 - 통학버스, 숙박시설 제공 포함
 -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위탁기간 : 2022. 12. ~ 2024. 2.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5백만 원 정도
 - 산출근거
 - 11박 12일 프로그램 : 1인당 1,500천 원
 - 1,500천 원 × 50명 = 75,000천 원
- 추진일정
 - 2022. 11월 : 수탁기관 선정
 - 2023. 1월 :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2022학년도 겨울방학중)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어체험 방학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관내 저소득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영어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맞춤형 교육도시 구축 및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2년 9월 15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한우아파트(달성군-10-0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지정(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4.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06. 6. 12. : 정비예정구역 지정
- 2022. 2. 3.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안)결정 신청(조합→郡)
- 2022. 8. 16. :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8. 12. ~ 9. 12. : 주민의견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 2022. 9월 : 군의회 의견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 2022. 9월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郡→市)
- 2022. (미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市)
- 2022. (미정) : 정비구역 지정 고시(市)

5. 주요내용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34-2번지 일원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개요 : 지하3층/지상25층, 총 4개동 (공동주택 390세대)

구 분	내 용			
정비구역면적	12,075㎡			
대지면적	11,741㎡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2,207.31㎡			
연면적	전체	52,053.41㎡	건폐율	18.8%
	지상층	30,088.27㎡	용적율	256.27%
	지하층	21,965.14㎡		
공동주택(세대)	구 분		세대(호)수	비율
	계		390	100.0
	전용면적 46.84㎡ (18평)-임대주택		111	28.46
	전용면적 59.82㎡ (28평)		76	19.49
	전용면적 59.94㎡ (35평)		178	45.64
	전용면적 72.95㎡ (36평)		25	6.41
주차대수(대)	구분	법정	계획	
	소계	397	506(법정대비 약 127.5%)	
	아파트	390	499(세대당 1.28대)	
	근생시설	7	7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는 한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지정(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7개동 총 5층 360세대의 한우아파트를 4개동 지하3층 지상25층 390세대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전용면적 46.84㎡ 111세대, 59.82㎡ 76세대, 59.94㎡ 178세대, 72.95㎡ 25세대이며, 주차대수는 499대로 세대 당 1.28대입니다.

- 관련부서 협의 결과 주요 의견으로, 한우아파트 남측 교차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신설 및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로 설치, 사업지 북측 송전탑 이전 의견이 있었으며, 본 사항은 정비 계획안에 반영 되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